다산학 46호 (2025.6) | 007~028

다산 예학의 위상과 함의

장동우 |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목차

1. 조선시대의 예학 연구
2. 조선시대 예학에 대한 연구 시각
3. 조선시대 예학 연구의 개성
4. 조선시대 예학 연구의 진전
5. 다산의 예학 연구
6. 다산 예학에 대한 연구
7. 『상례사전』과 『상의절요』의 위상과 함의

1. 조선시대의 예학 연구

동아시아 예치문화는 『주례周禮』, 『의례儀禮』, 『예기禮記』의 삼례서三禮書와 『가례家禮』가 주된 텍스트로 활용되는 형태이다. 삼례서의 제도화를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주례』가 편찬된 이후부터 오례五禮가 그 기준이 되었다. 이후 오례 체제는 당대唐代 『정관례貞觀禮』(실전, 637), 『현경례顯慶禮』(실전, 658) 그리고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732), 송대宋代의 『정화오례신의政和五禮新儀』(1113), 명대明代의 『홍무예제洪武禮制』(1381), 『대명집례大明集禮』(성서: 1370, 초간: 1530), 『대명회전大明會典』(1497) 등으로 정비되어 국가전례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민간의 차원에서 보면, 위진魏晉시대 강성대족을 중심으로 수립되면서 송대 사대부 계층의 성립과 더불어 서의류 서적이 민간 사회에 확산되고 『서의書儀』(성서: 1081, 초간: 순희연간1174~1189)를 거쳐 결국 『가례』(초간: 1211)라는 형태로 일반화된다. 이렇게 일반화된 『가례』는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만나 다양하게 활용·변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종成宗대 수립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5)는 동아시아 예학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저술이다. 국가의 층위에서 『주례』에 기반한 오례 체제가 국휼國恤까지를 포함하는 형태로 완결되었다는 점과 민간의 층위에서 대부와 사서인의 사례四禮에 관한 행례行禮의 표준지침을 『가례』를 중심으로 하고 조선의 시속을 반영하여 현지화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중국의 『대명집례』 또한 품관品官과 서인庶人의 '관혼상제의 의례에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가례』를 수용하고 있다'고 분석되지만, 국휼에 관한 의주儀注는 당대는 물론 청대에 이르기까지도 성문화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은 고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인종대(1122~1146) 최윤의崔允儀(1102~1162)가 편찬한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는 실전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에 기반하여 정리된 『고례사·예지』에는 민간의례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국휼에 관한 의주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국조오례의』의 성립은 국가전례에서부터 민간의례에 이르기까지 완결된 형태의 표준지침이 동아시아 최초로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변화가 있거나 새롭게 추가된 전례를 정리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1744),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1751),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1758),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1788), 『대한예전大韓禮典』(1897) 등이 속속 간행된다.

민간의 측면에서는, 여말麗末에 『가례』가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되다가 15~16세기에 이르러 조선의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설의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텍스트화하기에 이른다.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제도와 텍스트 양쪽 모두 지속해서 창신되었고, 『가례』를 수행하는 계층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현재까지의 연구로 볼 때, 중국에서는 15세기 구준丘濬(1420~1495)의 『가례의절家禮儀節』(1474) 이후 『가례』를 보완하는 텍스트 작업이 다소 답보 상태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하여 조선에서 이룩한 제도와 텍스트의 유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어느 지역도 능가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경우 송대 이후 저술된 『가례』 관련 연구서가 270종(現傳 121여종)이지만,[1] 조선의 경우는 실전된 것을 포함하여 691종이고

1) 중국에서 산출된 가례 연구서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呂振宇, 『家禮源流編年輯考』, 華東師範大 博士學位論文, 2013; 陸睿, 『中國傳統家禮文獻叙錄』,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참조)

宋代: 5종	失傳: 3종	現存: 2종
元代: 6종	失傳: 2종	現存: 4종

그 중 현전하는 것도 410여종에 이른다.[2] 일본의 경우는 오처중이吾妻重二의 조사에 따르면 60여종이 전하고, 베트남은 미지수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7권본의 조선본 『가례』가 영조대인 1759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가례』를 통해 민간에서 구현한 동아시아 사회의 예치가 조선에서 그 정점에 도달하였음을 말해준다.

2. 조선시대 예학에 대한 연구 시각

조선시대 예학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예송禮訟을 중심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식민지지배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그들에 의해 당파성론으로 변질되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이용된다. 1950년대에 조선시대 예학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제기된다. 현상윤玄相允(1893~??)의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에서 시작되고 이병도李丙燾(1896~1989)의 『한국유학사韓國儒學史』에서 정형화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17세기 예학시대론이 그것이다.[3] 17세기 예학시대론은 한편으로는 예송을 조선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당쟁의 시대적 전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극복·개혁하는 시대전환적 학문으로서 실학이 등

明代: 158종	失傳: 96종	現存: 62종	
淸代: 95종	失傳: 48종	現存: 47종	
民國: 1종	失傳:		現存: 1종
未詳: 5종	失傳:		現存: 5종
總 : 270종	失傳: 149종		現存: 121종

2) 본 통계는 다음의 연구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다. 高英津, 『朝鮮中期禮學思想史』, 한길사, 1996; 崔敬勳, 『朝鮮時代 刊行의 朱子 著述과 註釋書의 編纂』,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8; 南在珠, 『朝鮮後期 禮學의 地域的 展開 樣相 硏究』, 慶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3) '17세기 예학시대론'의 공과에 대해서는 박종천, 「조선시대 전례논쟁에 대한 재평가 – 입승대통의 전례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11집, 2001을 참조.

장하였다고 보는 시각과 결합되어 실학에 대한 연구를 추동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쟁을 자연스런 정치 현상으로 파악하여 예송에 나타난 견해 차이가 예론에 대한 학문적 입장 차이에 근거한다고 봄으로써 예송의 사상적 측면을 해명하여 17세기와 18세기를 성리학의 진전과정으로 통합시키는 예학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17세기 예학시대론에 의해 촉발된 예학 연구는 개별 연구가 심화 · 축적됨에 따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에 산출된 삼례서三禮書 및 『가례』 관련 연구서 97종의 성격과 그 특색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예학적 진전을 설명하는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해 '15세기에는 『주례』와 『예기』가, 16세기에는 『의례』와 『가례』가, 17세기 초반에는 『의례』와 『가례』 외에 다시 『예기』가 부각되며, 예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제례서祭禮書⇒상제례서喪祭禮書⇒사례서四禮書로 발전하고, 17세기 초에 가면 『가례』와는 다른 체제의 예서인 왕사례서王士禮書와 예기주석서禮記注釋書가 나타난다'[4]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방법론은 인륜적 본성을 생활양식으로 제도화하는 다양한 모색의 결과인 예서를 대상으로 삼아 형식상 또는 내용상의 변화 과정에 나타난 예학의 진전과정을 해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이지만, 조선시대 예학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특색과 산출된 예서의 성격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에 해석상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예송을 포함하여 한국 예학을 당쟁사적 독법이 아닌 유교 예학의 내적 문법에 따라 읽도록 각성시키는 연구시각이 제출되었다. 유교 예학의 역사를 '효孝와 제弟로 대표되는 인륜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자 인

4) 高英津, 「朝鮮 中期 禮說과 禮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간의 종차적 특질로 설정한 유교가 효孝-친애親愛-친친親親과 제弟-공경恭敬-존존尊尊의 두 요소를 생활양식의 다양한 층위에서 어떻게 배합할 때 적절하고 충분한가를 성찰한 것'으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예송의 본령은 '친애와 존경의 인륜적 정감을 예로 제도화하여 수행할 때, 그리고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변례變禮의 상황에서 예를 구성해야 할 때, 불가피하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친친과 존존의 선차성先次性에 관련한 논쟁으로, 인륜에 기반한 예치문화를 축적적으로 발전시켜온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논쟁'[5]이라는 예학사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아울러 조선에서 산출된 민간의례서를 행례의 표준지침을 제시하는 행례서行禮書, 명물도수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그 연원을 추적하는 고증서考證書, 기존의 행례 규정을 개정하여 현지화하거나 없는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는 변례서變禮書로 구분한 뒤, 16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되는 『가례』에 대한 연구는 상례와 제례를 중심으로 행례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17세기 초반 기념비적인 성과를 내고 18세기 중반 이후 그 절정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6]

5) 李俸珪, 「禮訟의 哲學的 分析에 대한 再檢討」, 『大東文化硏究』 제31집, 1996.
6) 장동우,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진전」, 『태동고전연구』 제31집, 2013.

3. 조선시대 예학 연구의 개성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간기불명		합계	
	저술	논문	저술	논문	저술	논문	저술	논문	저술	논문	저술	논문	저술	논문	저술	논문	저술	논문
주례				1		2		3		3	3 (2)	6	1	3 (1)			4 (2)	18 (1)
의례					1 (1)	1		10	3 (1)	14	1	6	1	8			6 (1)	39
예기		2	2 (1)		1 (1)		2 (1)	14	5	17	2	26	2 (2)	9	1	2	16 (5)	69
가례	1 (1)		3 (2)	5[7]	33 (21)	121	93 (48)	715	130 (69)	1152	120 (50)	893	171 (55)	1450	140 (28)	99	691 (274)	4435

표: 조선시대 三禮書 및 『家禮』에 대한 연구현황괄호 속의 숫자는 失傳된 종수

민간 부문에서 산출된 삼례 및 『가례』 연구서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다.[8]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이라는 독보적인 연구가 15세기 초에 이루어진 것을 예외로 하면, 삼례서에 대한 경학적 연구는 물론 『가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는 것은 그로부터 한 세기 반이 지난 16세기 중반 이후이다. 17세기까지로 한정하면, 『예기』 관련 연구는 21건[저서: 5종(실전 3종 포함), 논문: 16건]이고 『의례』 관련 연구는 12건[저서: 1종(실전), 논문: 11

7) 『한국문집총간』(민족문화추진회 간)에 수록된 문집 약 1,259종 및 『한국문집총서』에 수록된 문집 약 2,300종을 대상으로 서간과 잡저를 조사하여 『가례』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임.

8) 본 자료에서 삼례서에 대한 저술과 논문은 한국역대문집총서와 한국문집총간의 목록을 DB화한 한국학종합DB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건이며 『주례』 관련 연구는 6건(논문: 6건)이다. 반면 같은 시기 『가례』 관련 연구는 971건[저서: 130종(실전 72종 포함), 논문: 841건]이다. 저서만을 기준으로 보면 『가례』 연구성과는 『예기』의 30배에 달하고 이러한 비율은 이후 점점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례』와 『의례』에 관한 연구를 내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경학적으로 유의미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예기』에 대한 연구는 『가례』에 규정된 예제의 경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작업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색을 보인다. 예컨대, 김장생金長生(1548~1631)은 「경서변의經書辨疑」(성서: 1618, 초간: 1666, 7권3책)의 '예기' 부분의 제목 바로 밑에 소주小註로 "이 편에서 의미에 의심이 가는 것과 관련한 여러 설들은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기록하지 않고, 글자에 대한 해석과 오류를 바로잡은 것만을 남겨 둔다."[9]라고 기록하고 있다. 『의례문해』는 서신을 통해 제자들과 『가례』와 관련된 의문疑文과 변례變禮에 관해 토론했던 내용을 『가례』의 체재에 따라 분류하여 고증한 저술이다. 이를 통해 『예기』에 대한 연구가 『가례』에 대한 고증작업의 일부로 통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를 통해 예제의 전범이 되는 삼례서에 대한 경학적 탐구가 아니라 『가례』 연구가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례』는 본질적으로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현장에서 사례四禮의 수행을 목표로 고제古制인 『의례』와 금제今制인 『서의書儀』를 골간으로 재구성한 행례서라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조선에서 예학에 대한 연구는 예제를 수립하고 생활세계에서 실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

9) 金長生, 『沙溪全書』 권16, 「經書辨疑 · 禮記」. "此篇中疑義諸說, 詳載『疑禮問解』等書, 故此不復錄而只存字訓及訂誤云."

이와 함께 조선에서 산출된 『가례』 연구서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례』를 기반으로 사례四禮를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둔 행례서와 명물도수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그 연원을 삼례서 등의 문헌을 통해 고증하는 것에 중점을 둔 고증서, 『가례』의 규정을 개정하여 현지화하거나 『가례』에 없는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여 수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 변례서가 그것이다. 명물도수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그 연원을 추적하는 작업이 제례制禮의 정신을 문헌에 대한 고증 또는 주석을 통해 확인하는 넓은 의미의 고증에 속하는 것이라면, 『가례』의 규정을 개정하여 현지화하거나 『가례』에 없는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여 수행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은 확인된 제례의 정신에 기반하여 예를 변경하는 변례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변례의 성과는 다시 행례의 표준지침을 개정하거나 부칙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고증은 변례를 위해 복무하고 변례는 행례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 시대 예학 연구는 한 마디로 행례行禮 또는 수행修行 중심이라는 개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4. 조선시대 예학 연구의 진전

『국조오례의』의 규정된 품관과 사서인의 사례四禮 관련 의주에서, 관례와 혼례는 『가례』의 본문과 본주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어서 『명집례』와는 달리 『가례』와 큰 차이가 없다. 상례는 본문과 본주는 물론 부주까지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이지만 일부 의절과 하위 의절의 경우는 『가례』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연원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명집례』의 품관과 서인의 상례가 『가례』와 『정화오례신의』를 분명한 연원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례는 『가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행례의 장소, 봉사대수, 의절의 생략 등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례』를 준수한 『명집례』와는 다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품관과 사서인의 사례四禮 관련 의주는 『명집례』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재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10)]

『국조오례의』의 수립 이후 한 세기 반이 지난 16세기 중반 이후 조선에서의 『가례』 연구는 본격화되어 18세기 후반 정점에 도달한 뒤 20세기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과정에서 행례와 고증 그리고 변례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고례의 정신에 따른 『가례』의 보완'이라는 일관된 문제의식에 따라 학파적 분기를 넘어서서 연구가 진행된다.[11)]

행례서의 경우는 16세기에 마련된 김장생1548~1631의 『상례비요』를 '사례四禮'로까지 확장하면서 '변례'를 보강하는 작업이 18세기 전반기까지 계속된다. 고증주석서의 경우는 16세기 삼례서와 송명대 학자들의 자료를 위주로 진행되던 '고증'과 '주해'의 작업이 17세기 이후 조선 학자들의 예설을 중심으로 '집설集說'하고 '주해註解'하는 작업으로 방향을 바꾸어 18세기 전반기까지 진행된다. 변례서의 경우는 16세기 조진趙振(1535~1625)의 『퇴계상제례답문退溪喪祭禮答問』(초간: 1610, 3책, 2권2책, 1권1책)의 문제의식이 17세기 『의례문해疑禮問解』(초간: 1646, 4권4책)로 계승되어 변례에 관한 토론을 집성하는 작업이 18세기 전반기까지 지속된다.

세 측면의 연구는 18세기 중반 이후, 행례서의 경우 이재李縡(1680~

10) 장동우, 「동아시아 國家典禮書에 규정된 民間儀禮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제102집, 2024.

11) 이봉규, 「실학의 예론」, 『한국사상사학』 제24집, 2005.

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성서: 1746, 초간: 1844, 8권4책)과 정중기鄭重器(1685~1757)의 『가례집요家禮輯要』(성서: 1752, 초간: 19세기중엽, 7권3책)이고, 변례서의 경우 박성원朴聖源(1697~1767)의 『예의유집禮疑類輯』(성서: 1758, 초간: 1783, 28권15책)과 신근申近(1694~1754)의 『의례유설疑禮類說』(성서: 1723, 초간: 1792, 11권5책)이며, 고증서의 경우 이의조李宜朝(1727~1805)의 『가례증해』(초간: 1792, 14권10책)와 유장원柳長源(1724~1796)의 『상변통고常變通攷』(성서: 1783, 초간: 1830, 30권16책) 등을 통해 절정에 도달한다.[12]

19세기에 이르러 율곡학파는 『가례』 체제로 수렴되는 단일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퇴계학파는 『가례』 체제로 수렴하거나,[13]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체제로 확장하거나,[14] 『가례』 체제는 물론 『의례경전통해』 체제로부터도 이탈하는 양상[15]으로 변주된다. 아울러 『가례』를 대체하는 행례서의 수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저술된 예서가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20세기의 연구는 193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행례서를 중심으로 사례四禮 연구로부터 사례士禮 연구로 그 범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단순 행례서를 마련하는 작업이 반복되다가 1969년에 이르면 자취를 감춘다. 19세기 '『가례』를 대체하는 행례서의 수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저술된 예서'는 구체적으로 다산茶山의 『상의절요喪儀節要』[16]를 가리키는 것이다.

---

12) 장동우,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진전」, 『태동고전연구』 제31집, 2013.

13) 『家禮輯解』(柳致明), 『家禮補疑』(張福樞)가 대표적이다.

14) 『全禮類輯』(柳疇睦)이 그것이다.

15) 『士儀』(許傳)가 그것이다.

16) 『喪儀節要』를 포함한 『四禮家式』에 관해서는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사례가식』, 사람의무늬, 2015.

5. 다산의 예학 연구

다산의 예학 관련 저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술	권수	성서	문집분류	번역여부
①조전고弔奠考	1권	1803	상례외편	
②단궁잠오檀弓箴誤	6권		상례외편	
③상의광喪儀匡	17권		상례사전	
④타편잠오他篇箴誤	1권		상례외편	
⑤고례영언古禮零言	1권	1804	상례외편	
⑥예의문답禮疑問答	3권	1805	사례가식	
⑦정체전중변正體傳重辨	3권		상례외편	○1995
⑧상구정喪具訂	6권		상례사전	
⑨제례고정祭禮考定	3권	1808	사례가식	○2015
⑩상복상喪服商	6권	1809	상례사전	
⑪가례작의嘉禮酌儀	3권	1810	사례가식	○2010
⑫상기별喪期別	21권	1811	상례사전	
⑬춘추고징春秋考徵	12권	1812		○2025
⑭예고서정禮考書頂	1권	1816 이전	상례외편	
⑮상의절요喪儀節要	6권	1817	사례가식	○2015
⑯경세유표經世遺表	48권			○1977
⑰국조전례고國朝典禮考	2권	1818	상례외편	○2010
⑱풍수집의風水集議	3권	1825		○2015
	143권	**/503권**		**80권**

표: 다산의 예학 관련 저술

다산은 유배 초기를 예송을 재검토하고 그 경학적 근거를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군주 복제에 관한 논점들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유배 1년 뒤인 1801년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을 쓴다. 여기에 자료를 보충하고 논점을 재정리하여 1805년 「정체전중변正體傳重辨」을 완성한다. 이와 함께 1803년 「상의광喪儀匡」을 시작으로, 1805년 「상구정喪具訂」, 1809년 「상복상喪服商」, 1811년 「상기별喪期別」의 4편으로 구성된 『상례사전』을 마무리한다. 1818년에 완성된 「국조전례고國朝典禮考」를 더하면 상례喪禮에 관해서는 사례士禮와 방국례邦國禮를 아우르는 완정한 체계를 이루게 된다. 이 이외에도 『사례가식四禮家式』으로 분류되는 「제례고정祭禮考定」, 「가례작의嘉禮酌儀」, 「상의절요喪儀節要」와 그 부록인 「예의문답禮疑問答」 그리고 『춘추고징春秋考徵』, 『경세유표經世遺表』 등 방대한 예학 관련 저작이 있다. '한국 실학파의 예학禮學 대사大師'[17]라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① 「조전고弔奠考」, ② 「단궁잠오檀弓箴誤」, ④ 「타편잠오他篇箴誤」, ⑤ 「고례영언古禮零言」, ⑦ 「정체전중변」, ⑭ 「예고서정禮考書頂」, ⑰ 「국조전례고」는 『상례외편』으로 분류된다. 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저술들은 유배 초기의 작품으로 『상례사전』의 저작시기와 중첩된다. ①은 다른 사람의 喪에 '조문(弔)'을 하고 '전을 올리는 것(致奠)'과 관련하여 고례인 삼례서와 경전의 기록에 근거하여 대체적인 원칙과 의절을 마련한 것이다. 모두 16개의 표제항을 마련하여 다루고 있다. ②는 성호星湖의 『예식禮式』이 '지위와 재산이 없는 사람을 위해 깊이 염려하고 오래 생각하여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설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성호의

17) 葉國良, 「韓儒 丁茶山의 禮學 저작을 통해 본 韓·中 禮法의 비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집, 2009, 162쪽.

『예식』이 「단궁」에 기록된 공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임을 논증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이다. 즉 고례는 번거롭고 복잡하여 공연한 겉치레가 있기 마련이지만, 「단궁」에서 말한 것은 대개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자의 은미한 말씀(微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⑤는 '고례 가운데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아 놓았다'는 뜻의 겸사로 '시변尸辨', '시의尸義(중씨작)', '상제고殤祭考', '굴적박屈狄駁', '절족박絶族駁', '솔조박率祖駁', '대솔박帶率駁', '예주박袂肘駁', '좌임左衽', '모도박冒韜駁', '대하척박帶下尺駁' 등 11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인 '시의(중씨작)'는 다산의 중형仲兄인 손암巽庵 정약전丁若銓이 지은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손암은 다산이 '시변'을 지었다는 말만 듣고 그 글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상례사전』 「상의광」에 언급되어 있는 시동尸童에 관한 몇 가지 조목이 고인들의 주장과 차이가 많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모두 『예기』와 『의례』에 실려 있는 것으로 정현鄭玄과 진호陳澔의 해석을 비판한 것들이다.

⑦은 1659년(己亥) 효종(1619~1659)에 대한 계모 조대비趙大妃(1624~1688)의 복제服制와 1674년(甲寅) 효종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1618~1674)에 대한 조대비의 복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1800년(庚申)에 정조에 대한 영조비 정순왕후貞純王后와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빈嬪이자 정조의 생모인 혜경궁의 복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⑰은 조선과 명에서 입승대통入承代統한 군주가 자신의 생부를 추숭하는 사안을 두고 벌어졌던 전례논쟁을 분석한 것으로, 국가전례에 관한 논쟁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⑭는 서건학徐乾學의 『독례통고讀禮通考』를 읽으면서 의문이 나거나 떠오르는 생각을 책머리에 기록한 것으로, 『독례통고』 권1~권29 「상기

喪期」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유당전서보유』 5책에 '독례통고전주讀禮通考箋注'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는 저술에는 『독례통고』 권30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예고서정」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③ 「상의광喪儀匡」, ⑧ 「상구정喪具訂」, ⑩ 「상복상喪服商」, ⑫ 「상기별喪期別」은 『상례사전喪禮四箋』을 구성하는 4편이다. 다산은 "『상례사전』은 내가 성인을 독실하게 신뢰하여 지은 글로서, 스스로 미친 파도를 돌리며 백 가지 물줄기를 막아서 수사洙泗의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 이 두 책(『주역사전周易四箋』과 『상례사전』을 가리킴)이 잘 전해져서 이어받는 자가 있다면 나머지 저술은 없어져도 좋다"[18] 고 할 정도로 『상례사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③은 『의례』 「사상례」·「기석례」·「사우례」에 기록된 상례의 절차를 해석한 것이고, 상례의 절차에 관련된 의衣·금衿·관棺·곽槨의 제도를 다룬 것이 ⑧이고, 상복上服의 최衰·관冠·질絰·대帶의 제도를 논한 것이 ⑩이며, 오복의 기간과 그 시복대상을 논한 것이 ⑫이다.

『상례사전』은 50권 17책의 방대한 저술로 참고하고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절요본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 다산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다르고,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고, 중국과 조선의 풍속이 다르고, 성격과 기호가 편중되고, 지식과 취향이 각각 달라 이것저것을 참작하여 회통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주저하다가, 1815년 겨울 맏아들인 학연學淵이 병시중을 들기 위해 와 있으면서 절요본을 만들도록 거듭 요청하자 '동시대에 공개하는 것은 내가 감히 할 수 없지만,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찌 사양하겠는가?'하고는 한 집안에서 사용하기

18) 『詩文集』 卷18, 「示二子家誡」(『定本』 제4책, 27쪽). "『喪禮四箋』是吾篤信聖人之文字, 自以爲回狂瀾而障百川, 以反洙泗之眞源者. …… 卽此二部得有傳襲之, 餘雖廢之可也."

위한 의도에서 ⑮「상의절요喪儀節要」를 편찬한다. 여기에 1808년 47세에 저술한 ⑨「제례고정祭禮考定」 2권과 1810년 49세에 완성한 ⑪「가례작의嘉禮酌儀」(「관례작의冠禮酌儀」와 「혼례작의婚禮酌儀」) 1권을 합하여 『사례가식四禮家式』이라 부른다. ⑥은 1816년 제자인 이강회李綱會가 부친상을 당하여 상례에 대하여 자주 질문을 하자 '빈殯' 이전은 학가와 문답한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계빈 이하 담제까지에 관한 문답을 새로 1편으로 구성한 것으로, 「상의절요」의 '해설'편에 해당한다.

6. 다산 예학에 대한 연구

다산 예학에 대한 1990년대 이전의 연구(4편)는 경세론의 토대로서 『주례周禮』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이후 1990년대(10편)에는 예송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는 것이 주조를 형성하는 동시에 『상례사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시작되며, 2000년대 이후(50편)에는 다산 예학의 철학적·종교적 함의를 분석하고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에 수록된 향례와 학례를 주목하며 다산 예학의 성격을 동아시아 예학사의 층위에서 검토하는 연구로 심화되었다.[19] 표2에서 제시한 저술을 기준으로 보면, 90년대 이전에는 『경세유표』가, 90년대에는 『정체전중변』과 『상례사전』이, 2000년대에는 『춘추고징』, 『사례가식』, 『경세유표』가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세유표』와 『정체전중변』에 대한 검토는 경세론과 예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춘추고징』, 『상례사전』, 『사례가식』에 대한 연구는 예학

19) 이상의 기술은 이병유, 「실학의 예론과 예학 연구 현황과 과제」, 『사학연구』 제144호, 2021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의 경학적 토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그 점에서 다산 예학에 대한 연구는 경세론과 예송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경학적 토대에 대한 연구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례사전』에 대한 연구는 「상의광」,[20] 「상기별」,[21] 「상구정」[22]을 분석한 학위논문이 나왔고 근래 「상복상」[23]에 대한 학위논문이 제출됨으로써 기초적인 연구가 30년 만에 겨우 일단락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상례사전』에 대한 연구의 전부라는 것이다. 『사례가식』에 대한 연구는 2010년 그 일부인 「가례작의」, 2015년 전체에 대한 역주본이 간행된 이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시점에서 다산 예학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례사전』에 대한 역주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상례사전』과 『상의절요』의 위상과 함의

『상례사전』은 정현鄭玄과 가공언賈公彦・공영달孔穎達을 포함하여 후대의 주석가들의 해석적 입장에 의해 덧칠된 고례古禮의 원형을 복원하여 행례서로서의 『의례』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의례경전통해』의 문제의식과 이를 진전시킨 『독례통고』의 성과가 성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의례』의 경문과 기문만으로 의절을 재배치하고

20) 유권종, 『茶山 禮學 硏究: 喪儀說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21) 장동우, 『茶山 禮學의 硏究: 『儀禮』「喪服」과 『喪禮四箋』「喪期別」의 比較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22) 순남숙, 『茶山의 斂襲衣 制度에 관한 硏究: 「喪具訂」을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3) 차서연, 『『喪禮四箋』「喪服商」에 나타난 茶山의 喪服觀』,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새로운 해석적 시각을 기반으로 의절을 재배치한 『상례사전』의 기획과 성과는 『의례경전통해』와 『독례통고』에 수록된 방대한 문헌에 대한 독해를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에서 『상례사전』은 '편차編次'로 그 성격을 규정한 것에서 확인되듯 '창신적'이기보다는 『의례경전통해』에서 『독례통고』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경학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성찰적으로 진전시킨 저술로서의 한 위상을 가진다.

『의례儀禮』는 본질적으로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현장에서 수행된 의례를 성문화한 행례서이다. 『의례경전통해』와 『독례통고』는 행례서인 『의례』의 본질을 방대한 고증의 장막으로 가린다. 『의례』의 난독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처라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난독성이 해소된 이후 곧바로 요구될 새로운 행례서에 대한 전망과 기획은 두 책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상례사전』 또한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현장을 배경으로 성문화된 상례喪禮의 한 원형을 새로운 해석적 입장에 기반하여 복원한 '편차'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점에서 『의례경전통해』·『독례통고』와 처지가 다르지 않다.

『의례경전통해』와 『독례통고』를 포함하여 『상례사전』이 행례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시대와 현장'을 반영하여 새롭게 예제를 마련하는 지난한 과정이 요구되며, 그러한 작업의 관건은 지위와 경제력의 차이, 달라진 시대 상황 그리고 중국과 조선이라는 현장을 반영하여 재성문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 바로 그 지점에 동아시아 예학사에서 『의례경전통해』와 『독례통고』의 문제의식을 진전시켜 행례서로 구현한 『상의절요』의 위상이 자리한다.

『상의절요』가 의절과 세부규정의 층위를 막론하고 『상례사전』을 기반으로 『가례』와 속례俗禮를 성찰적으로 활용하여 재성문화한 작업은,

16세기 중반 이후 조선에서 진행된 가례 연구가 '『가례』를 고례의 정신에 따라 보완하는 길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가례』의 강목 체재를 벗어나 고례인 『의례』를 중심으로 하여 성찰적으로 재성문화된 조선시대 최초의 행례서인 『상의절요』의 위상이 자리한다.

『상의절요』는 인정人情 또는 정리情理로 통섭되는 '상례의 대원칙(大義理)'을 기반으로, 고례의 명문 규정과 『가례』의 규정 그리고 속례까지도 성찰적으로 활용 또는 폐기하는 한편, 18세기의 조선이라는 '시대와 현장'을 반영하여 수행가능한 형태로 재성문화한다. 『의례』를 재배치(編次)한 『상례사전』 또한 완고하게 준수되기보다는 이러한 기획의 일환으로 해체되어 재성문화된다는 점에서 고례 또는 『가례』와 그 위상에 조금의 차이도 없다. 다산은 『의례』를 '일왕一王의 의문儀文으로 지금의 의주儀注 또는 홀기笏記와 같은 것'으로 본다.[24] 그 점에서 『상의절요』는 '먼 옛날 제왕의 일의 실체를 복원(知遠古帝王之事)'하는 『상례사전』의 단계를 거쳐, 이를 기반으로 '당대의 현실에서 수행(施諸今)'[25] 가능한 형태, 즉 '새로운 일왕의 의문'으로 제공하려 한 다산 예학의 기획이 사가례 방면에서 구체화되어 제출된 저작이라는 한 함의를 가진다.

다산은 『가례』를 "한 집안의 예일 뿐 천하만국의 예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예가禮家들이 『가례』를 조종祖宗으로 삼고 있음을 근거로 "천하만국의 예라고 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다."[26]라고 천명한다. 그

24) 『文集』 卷8, 「十三經策」(『定本』 제2책, 55쪽). "『儀禮』者, 當時所用一王之儀文, 如今儀注笏記者也."

25) 『尙書古訓』, 「尙書古訓序例 · 尙書知遠錄序說」(『定本』 제11책, 27쪽). "其爲之知遠者何? 書之爲敎, 知遠而已. 詁字訓句, 歸知遠古帝王之事而已. 知之奈何? 將以施諸今也. 其有不合者奈何? 曰不知之故不合, 如其知之, 今猶古也."

26) 『文集』 卷12, 「羅氏炅家禮輯語序」(『定本』 제2책, 408쪽). "天下有道, 非天子不議禮. 道旣

러나 『상의절요』의 모두冒頭에서 '우리 집안에서 쓰도록 마련한 것이지만,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수정 윤색하고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 또한 사양하지 않을 것'[27]이라고 한 언명에는, 『상의절요』를 포함한 『사례가식』이 『가례』를 대체하여 보급·확산됨으로써 '고례의 원칙을 실현하는 왕정王政이 민간사회의 층위에까지 확립'되기를 소망하는 '행왕行王의 문제의식'[28]이 온장蘊藏되어 있다.[29]

(논문투고일 2025년 3월 9일,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18일)

衰, 禮在一家, 此朱子所以名其禮曰家禮. 家禮也者, 明一家之禮, 而非天下萬國之禮也. 然今之言禮者, 率以『家禮』爲禮家之祖宗. 今雖謂之天下萬國之禮, 靡不可也."

27) 『喪儀節要』 卷1(『定本』 제22책, 50쪽). "備一家之用, 其有同好者, 與之修潤, 議共行之, 亦所不辭."

28) 이봉규, 「명청조와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시대 『家禮』 연구의 특색과 연구방향」, 『한국사상사학』 제44집, 2013.

29) 장동우, 「『상의절요』의 연원과 재성문화의 원칙」, 『한국실학연구』 제30집, 2015.

참고문헌

논문과 단행본

고영진, 『朝鮮中期禮學思想史』, 한길사, 1996.

남재주, 『朝鮮後期 禮學의 地域的 展開 樣相 硏究』, 慶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박종천, 「조선시대 전례논쟁에 대한 재평가 – 입승대통의 전례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11집, 2001.

葉國良, 「韓儒 丁茶山의 禮學 저작을 통해 본 韓·中 禮法의 비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집, 2009.

순남숙, 『茶山의 斂襲衣 制度에 관한 硏究: 「喪具訂」을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呂振宇, 『家禮源流編年輯考』, 華東師範大 博士學位論文, 2013.

유권종, 『茶山 禮學 硏究: 喪儀說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陸睿, 『中國傳統家禮文獻敍錄』,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이병유, 「실학의 예론과 예학 연구 현황과 과제」, 『사학연구』 제144호, 2021.

이봉규, 「규범의 근거로서 혈연적 연대와 신분의 구분에 대한 古代儒家의 인식」, 『태동고전연구』 제10집, 1993.

_____, 「禮訟의 哲學的 分析에 대한 再檢討」, 『大東文化硏究』 제31집, 1996.

_____, 「실학의 예론」, 『한국사상사학』 제24집, 2005.
_____, 「명청조와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시대 『家禮』 연구의 특색과 연구방향」, 『한국사상사학』 제44집, 2013.
장동우, 『茶山 禮學의 硏究: 『儀禮』 「喪服」과 『喪禮四箋』 「喪期別」의 比較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진전」, 『태동고전연구』 제31집, 2013.
_____, 「『상의절요』의 연원과 재성문화의 원칙」, 『한국실학연구』 제30집, 2015.
_____, 「동아시아 國家典禮書에 규정된 民間儀禮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제102집, 2024.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사례가식』, 사람의무늬, 2015.
차서연, 『『喪禮四箋』 「喪服商」에 나타난 茶山의 喪服觀』,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최경훈, 『朝鮮時代 刊行의 朱子 著述과 註釋書의 編纂』,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8.